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민형배·이정문·김태선

주철현 • 전용기 • 이훈기

부승찬 • 권칠승 • 윤종군

허 영·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 다(안 제4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 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제49조(금융위원회의 | 명령권) ① |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
| •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 |
| | |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의 제한 |
| | |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 |
| | |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 | | 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 |
| | | 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
| | |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
| | |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바에 따라 대출원금의 상환유 |
| | | 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
| | |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
| | | 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 |
| | | 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 | |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
| | |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 |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 | |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
| | |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법 |
| | |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

으로 선포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 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지속된 경우